

# 감 사 보 고 서

- 전국무용제 지역예선 불법행위 신고사항 조사 -

2020.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실

# [ 목 차 ]

## I. 재심의 실시 개요

|                      |   |
|----------------------|---|
| 1. 재심의 배경 및 목적 ..... | 1 |
| 2. 재심의 범위 및 중점 ..... | 3 |
| 3. 재심의 기간 및 인원 ..... | 3 |
| 4. 재심의 결과 처리 .....   | 3 |

## II. 재심의 결과 및 처분사항

|                  |   |
|------------------|---|
| 1. 재심의 결정서 ..... | 4 |
|------------------|---|



-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실은 □□□□□에 '18년 강원지역예선 출전단체 중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2개 단체(♀♀♀♀♀♀, ♠♠♠♠♠♠♠♠)의 대표에게 지급된 제작지원금(보조금) 총 900만원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로부터 ‘시정(회수)’ 할 것을 '20년 8월 처분하였다.
  
-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뎡뎡뎡뎡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뎡뎡뎡뎡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에 ‘통보’ 처분 하였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는 대리인 □□□□□을 통해 ①『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는 부당하며, ☆☆☆☆☆☆☆를 배제한 뎡뎡뎡뎡에 대한 감사로 뎡뎡뎡뎡 내규의 『보조금법』 위반을 지적하고, ☆☆☆☆☆☆☆에 뎡뎡뎡뎡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보하는 행위는 ② 예술위 감사실의 월권행위로 감사의 절차적 부당성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전국무용제 지역예선 불법행위 신고사항 조사>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이번 재심의를 실시하였다.

## 2. 재심의 범위 및 중점

- (『보조금법』 위반) ☆☆☆☆☆☆☆가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한 ‘18년 제27회 《전국무용제》와 관련하여, 제작지원비를 수령한 보조금수령자 ‘CCC’, ‘DDD’ 과 이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예선을 주관한 ㉠㉠㉠㉠㉠의 「시행계획」 위반행위 등이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확인
- (감사의 절차적 부당성) 본 사안과 관련한 ㉠㉠㉠㉠㉠ 조사의 위법성 여부, ☆☆☆☆☆☆☆에 ‘㉠㉠㉠㉠㉠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하다고 통보한 원 처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3. 재심의 기간 및 인원

- 2020년 11월 2일부터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인 1명을 투입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였다.
  - 기간 : 2020.11.2.(월) ~ 12.23.(수) / 38일간 (※ 공휴일 제외)
  - 감사인원(1명) : ◆◆◆ 과장

## 4. 재심의 결과 처리

- 재심의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임감사 ●●●, 감사관 ◆◆◆ 등 내부 검토를 거쳐 2020.12.23.(수) 재심의 결과를 최종 확정함.



「전국무용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전국무용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무용제》 본선 및 지역예선 모두 경연의 참가자는 ‘유자격자’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부문의 참가자 자격조건은 ‘안무자는 반드시 유자격자’이어야 하고 ‘출연자 인원수는 유자격자가 30% 이상’으로 두 자격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뽀뽀뽀뽀뽀뽀뽀뽀(이하 뽀뽀뽀뽀)는 '18년 《전국무용제》의 강원지역 예선을 주관하면서, 지역예선에 출전하는 안무자와 출연자들의 참가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ㄱㄱㄱㄱㄱㄱ’과 ‘♠♠♠♠♠♠♠♠♠♠’이 지역예선에 참여하였고, 이 중 ‘ㄱㄱㄱㄱㄱㄱ’은 뽀뽀뽀뽀의 결정으로 본선진출자격을 획득하여 본선에 참가하였다.

☆☆☆☆☆☆는 지역예선을 주관한 각 뽀뽀뽀뽀로부터 제출받은 강원지역예선 참가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ㄱㄱㄱㄱㄱㄱ’과 ‘♠♠♠♠♠♠♠♠♠♠’에게 배정된 지원금을 각 단체의 대표자(지급대상자)인 CCC에게 700만원(예선+본선), DDD에게 200만원(예선)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뽀뽀뽀뽀 회장 AAA는 《전국무용제》 강원지역예선을 주관하면서 ‘ㄱㄱㄱㄱㄱㄱ’을 급조하여 지역예선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위배하였고, 회장 AAA와 사무국장 BBB은 ☆☆☆☆☆☆☆로부터 참가단체가 받은 보조금을 ‘뽀뽀뽀뽀가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편취하여 뽀뽀뽀뽀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뽀뽀뽀뽀는 ‘제27회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를 사업명으로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500만원에 대한 자부담(10%)을 뽀뽀뽀뽀의 내규라는 이유로 본선 참가단체(ㄱㄱㄱㄱㄱㄱ)에게 부담시키고 관련 보조금의 회계처리도 불투명하게 처리하였는데, 이 내규는 ☆☆☆☆☆☆☆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규정이며 『보조금법』 위반소지가 있다.

또한 ㉠㉠㉠㉠ 회장 AAA는 《전국무용제》 참가단체가 제작한 의상 등 소품을 사적으로 소장하고, 본인과 사제관계에 있는 무용수에게 감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았으며, 강원도 지역의 무용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지역 무용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등 ㉠㉠㉠㉠의 운영을 파행적으로 하고 있음이 ㉠㉠㉠㉠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사되었다.

이에 예술위 감사실은 《전국무용제》 소관부서인 ㉠㉠㉠㉠에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를 취소하고 ☆☆☆☆☆☆☆로부터 900만원을 시정(회수)하도록 처분하고, ☆☆☆☆☆☆☆에게 ㉠㉠㉠㉠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회의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 2. 재심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건 신청의 취지는 처분결과가 부당하므로 재심의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신청이유

(1) ☆☆☆☆☆☆☆가 공연제작비 지원금 명목으로 CCC와 DDD에게 지급한 보조금 900만원이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감사결과는 부당하다.

①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는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보면 허위자료나 서류위조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안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유용하여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임

② ☆☆☆☆☆☆☆는 ‘공연제작비’로서 지역예선 참가단체에게는 200만원, 본선 참가단체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예술위로부터 보조금(문예진흥기금)을 수령하여 해당자들에게 지급 후 정산하였음

③ 이에 따라 '18년 《전국무용제》 강원지역예선의 경우에도 경선에 출전한 5개의 단체에게 각 200만원, 본선에 진출한 1개의 단체에게 500만원의 공연제작비를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지급 함

④ 그런데, ☆☆☆☆☆☆☆는 '18년 전국무용제 강원도 지역 예선대회 참가단체 가운데 「운영규정」 제11조에 위배되는 무자격단체(♣♣♣♣♣♣, ♠♠♠♠♠♠♠♠♠♠)가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함

⑤ 이에 ☆☆☆☆☆☆☆는 해당단체들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상환취소 및 반납조치를 하였으나, 지역예선의 경우 무자격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불가 규정이 없고, 본선 참가로 공연제작비를 수령한 ‘♣♣♣♣♣♣’의 경우 본선에 참여하면서 출연진을 보강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공연제작비에 대한 환수처리는 하지 않음

⑥ ☆☆☆☆☆☆☆는 예술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면서 「운영규정」을 따르지 않은 업무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나, 이를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의 취지를 몰각하고 부당하게 확대해석 한 것임

(2) 예술위 감사실의 ㉠㉠㉠㉠㉠에 대한 감사진행과 강원도 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감사의 절차적 부당성이 존재한다.

① 본 건의 감사결과서 제2쪽에도 “예술위는 ☆☆☆☆☆☆☆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음

② 예술위는 ㉠㉠㉠㉠㉠에 대한 감사를 ☆☆☆☆☆☆☆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함

③ ㉠㉠㉠㉠㉠에서 발생한 「운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분은 ☆☆☆☆☆☆☆의 권한임

④ ㉠㉠㉠㉠의 운영 방식 및 내규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에 ㉠㉠㉠㉠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예술위의 감사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임

⑤ ㉠㉠㉠㉠㉠가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단체에게 보조금 2,500만원 중 10%를 부담시킨 것은 강원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며, ☆☆☆☆☆☆☆가 예술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문예진흥기금)으로 지급한 공연제작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예술위가 감사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3. 재심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다음과 같다.

i) 예술위로부터 보조금(문예진흥기금)을 받아 《전국무용제》를 운영하면서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무자격단체에게 총 900만원을 제작지원비로 지급한

☆☆☆☆☆☆의 행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ii) 예술위 감사실의 ○○○○○○ 조사와 강원도 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에 ○○○○○○에 대한 감사를 통보한 행위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 나. 인정사실

(1) ☆☆☆☆☆☆☆는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무자격단체에게 총 900만원을 제작지원비로 지급하였다.

① ☆☆☆☆☆☆☆는 '18년 《전국무용제》를 운영하면서, 「시행계획」에 따라 '18. 8. 29.부터 '18. 9. 8. 까지 전국 16개의 지역 예선대회를 거친 후 본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지역 예선대회에 출전한 단체에게는 각 200만원, 본선에 진출한 단체에게는 각 500만원을 예술위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문예진흥기금)으로 지급

② ☆☆☆☆☆☆☆는 ○○○○○○가 주관한 강원지역예선의 경우에도 경선에 출전한 5개 단체에게 각 200만원, 본선에 진출한 1개의 단체에게 추가로 500만원의 공연제작비를 단체의 대표들에게 지급

③ 그런데, 강원지역예선 참가단체 중 2개 단체(♣♣♣♣♣♣, ♠♠♠♠♠♠♠♠)가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참가자격에 미치지 못하였음이 행사 이후에 확인 됨

④ 이를 ☆☆☆☆☆☆☆는 뒤늦게 인지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 상훈취소 및 반납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⑤ 본선에 진출한 ‘♣♣♣♣♣♣’은 본선 참여할 당시에는 지역예선과 달리 출연진을 보장함으로써 참가자격을 갖추어 출전함

(2) 예술위 감사실은 ㉠㉠㉠㉠㉠을 조사하고 강원도 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에 ㉠㉠㉠㉠㉠에 대한 감사의 필요를 통보하였다.

① 예술위 감사실은 소관부서인 ■■■■■로부터 이첩받은 《전국무용제》 관련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 5월 ~ 6월 현장조사를 실시함

② ㉠㉠㉠㉠㉠는 이사회(1차 '17. 8. 27. (강릉) 및 2차 '17. 5. 14(원주))를 거쳐, ㉠㉠㉠㉠㉠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단체)는 수령하는 보조금의 10%를 사무국장의 업무협조(예산신청, 실행계획서 작성, 참가연락, 정산 등)에 대한 수수료로 ㉠㉠㉠㉠㉠에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규를 정함

③ 이 내규는 ☆☆☆☆☆☆☆의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 (운영규정, 내규 등 변경)를 따르지 않은 임의규정임

④ 그러나 '18년 《전국무용제》와 관련하여 ☆☆☆☆☆☆☆가 공연제작비로 각 지역 예선 출전팀에게 지급 한 200만원과 본선 진출팀에게 지급 된 500만원에 대하여서는 ㉠㉠㉠㉠㉠가 임의규정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⑤ '18년 강원지역예선에 출전한 단체의 대표자 CCC 등으로부터 50만원씩 ㉠㉠㉠㉠㉠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가 강원지역예선을 치루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관계로 참가단체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각출하여 심사비, 홍보비, 대관비 등 운영목적으로 사용되었음

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는 '제27회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2,800만원(자부담 300만원)의 보조사업을 강원도에 '18. 7. 27. 신청하여 '18. 8. 7. 강원도로부터 도비 2,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 회장 AAA, 사무국장 BBB은 수수료 임의규정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함

⑥ 이와 관련하여, 뎡뎡뎡뎡뎡는 본선 참가단체인 ‘ㄱㄱㄱㄱㄱㄱ’의 대표 CCC로부터 ‘18. 8. 30. 뎡뎡뎡뎡뎡 운영계좌(●● ○○○-○○○○-○○○○-○○)로 300만원을 입금받아 해당 보조사업의 자부담에 해당하는 참가단체의 숙박비, 교통비, 차량운임비, 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됨

⑦ 이러한 조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예술위 감사실은 ☆☆☆☆☆☆☆의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뎡뎡뎡뎡뎡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에 통보하였음

#### 다. 관계 법령

이 건의 관계법령은 생략한다.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운영규정」에 따른 무자격단체에게 총 900만원을 제작지원비로 지급한 ☆☆☆☆☆☆☆의 행위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와 보조금수령자 ‘CCC’, ‘DDD’ 등이 보조금 집행 및 수령에 있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8년, 제27회 《전국무용제》는 예술위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사업으로 선정되어 ☆☆☆☆☆☆☆가 6억원의 보조금(문예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는 『보조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4.18.(1차)과 ’18.7.16.(2차)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으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소관부서인 □□□□□(당시 ◆◆◆◆◆)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사업종료 후,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는 'e나라도움'으로 보조사업실적보고서(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뒤, '19.7.30. □□□□□는 수검을 완료하였다.

이 때 제출 된 서류 및 첨부자료 등을 살펴보면, ☆☆☆☆☆☆☆는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무용인들의 창작의욕 또한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용인에게 작품제작비를 지원함”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지역예선 공연제작지원비와 본선대회 공연제작지원비를 지역예선과 본선대회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에 보고하였다.

이는 ☆☆☆☆☆☆☆가 ‘♣♣♣♣♣♣’과 ‘♠♠♠♠♠♠♠♠♠♠’이 제27회 《전국무용제》 지역예선 및 본선에 참가한 것에 근거하여 두 단체의 대표 ‘CCC’, ‘DDD’에게 제작지원금 각각 7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정산을 위하여 제출 된 증빙서류(신청서, 신분증, 통장 등)를 살펴보더라도 고의로 조작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상응하는 적극적 기망행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 '18년 제27회 《전국무용제》에 대한 보조금을 위원회로부터 수령하여 ‘CCC’, ‘DDD’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이유 “(1)항”은 이유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전국무용제》의 운영위원회는 대회를 개최하기 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대회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의 심의 조정을 총괄하는데, 이 「시행계획」에도 역시 「운영규정」 제11조 참가자격과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27회 《전국무용제》는 ☆☆☆☆☆☆☆와 함께 예술위가 공동주최한 행사로서 예술위 소관부서 부서장이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였으므로, 「시행계획」은 『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며, ‘e나라도움’에 제출한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보조금법』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는 이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도 “전국무용제 예선 및 본선에 출연하는 안무자는 주민등록주소가 해당 시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되어야 하며 출연자 중 일정 비율은 또한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의 활동을 근거로 두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도 이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있었음이 확인 된다.

그리고 ☆☆☆☆☆☆☆가 재심의신청서에서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바, 강원지역예선에서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무자격단체의 참여가 있었음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예술위는 『보조금법』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에 따라 ☆☆☆☆☆☆☆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사업의 교부조건 및 「운영규정」, 「시행세칙」 등에는 관련행위에 대해 양형을 규정하는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고,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은 중앙관서의 장인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관부서(□□□□□)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본 재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2)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예술위 감사실의 뎡뎡뎡뎡뎡 조사와 강원도 도비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에 뎡뎡뎡뎡에 대한 감사를 통보한 행위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행위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예술위 □□□□□는 접수 된 진정서 및 ☆☆☆☆☆☆☆의 답변서 내용을 여러차례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지원사업인 《전국무용제》의 강원지역 예선과 관련하여 뎡뎡뎡뎡의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사업의 보조금수령자인 ‘CCC’, ‘DDD’ 등을 이용하여 뎡뎡뎡뎡가 이들에게 지급 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및 처리가 필요하였다.

이에 예술위 감사실은 관련 내용을 이첩 받아 검토하였고, 위원회 「감사규정」 제31조(감사의 범위)에 근거하여 소관부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보조금법』 제25조 제2항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보조금수령자 ‘CCC’, ‘DDD’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 조사

과정에서 ㉠㉠㉠㉠ 회장 AAA, 사무국장 BBB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 운영방식을 포함한 ‘수수료 임의규정’에 대한 진술을 하였고, 감사실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강원도 보조사업인 ‘제27회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와 관련 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이유 “(2)항” 중 ‘㉠㉠㉠㉠ 조사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은 기각한다.

그러나, 예술위의 보조사업인 《전국무용제》와 연관된 사안으로 ㉠㉠㉠㉠의 강원도비 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문예진흥기금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근거로 ㉠㉠㉠㉠에 대한 감사의 필요가 있음을 민간단체인 ☆☆☆☆☆☆☆에 통보한 예술위 감사실의 처분은 법적 권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의 신청이유 “(2)항” 중 ‘㉠㉠㉠㉠에 대한 감사의 필요를 ☆☆☆☆☆☆☆에 통보한 행위의 부당성’은 이유 있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무용제 지역예선 불법행위 신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 된, ㉠㉠㉠㉠ 회장 AAA와 사무국장 BBB이 인정한 ‘제27회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 보조사업 관련 부당사실을 해당 기관인 ‘강원도청’과 ‘감사원’에 통보한다.

#### 4. 결론

이 재심의신청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